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49호로 2025년 11월 7일 전승관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년정책 추진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년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커뮤니티 활동, 취업 정보 제공,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 문화·체육 등 청년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 11. 7.~2025.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현행 조례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제25조)를 두고 있으나, 지원기준인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라는 문구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연계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원활동 유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동 ▲해외취업 정보제공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 ▲문화·체육 활동 등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함으로써 지원의 범위와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한편, 현행 조례 제25조에 근거하여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청년지원 공모사업[신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지원대상:** 청년 참여·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관내 직능단체
- **주요내용:** 사회·경제·참여·문화 등 전반에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청년 사업을
직능단체가 직접 발굴 및 사업 수행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 유도
- **지원규모:** 각 사업별 약 2,500천원 ~ 3,000천원 차등 지원
- **소요예산:** 50,000천원(구비)

2025 청년 동아리 공모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5. 2. ~ 11.
- 사업대상: 19~39세 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영등포 구민 비율 50% 이상)
- 운영방법: 주제별 2개 동아리 선정(총 10개 동아리)하여 활동 경비 지원
- 활동주제: 운동/건강, 문화/예술, 자기계발/학습, 봉사활동, 기타 취미활동
- 소요예산: 10,000천원 (동아리당 1,000천원)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5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항은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해외취업 정보제공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사업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활동 사업 ▲체육활동 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커뮤니티 활동·직업역량 개발·문화 및 체육활동 등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포함한 지원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청년 정책이 단일 사업 중심이 아닌 다층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또한,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단체 등의 자율적 활동이 구정의 청년정책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민·관 협력 기반의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 21.>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